



서울시공보 3 서울특별시 도로공작 승인신청공고안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관 도로공작 관리 책임대장(장학수, 김원, 진용
백익률, 도석준)을 **서울로차량통행** 도로상 제322호의 의학적 이유
으로 따라 하지않고 신청하시게 하였습니다.

1. 신청대상 : 서울특별시 구외지역에 있는 모든 도로의 길장
2. 신청 기한 : 1963. 12. 5 - 12. 15
3. 구비서류 : 1) 신청서 2부 (신청 도로의 수종 및 **도로차량**
통행 (작성준의자)
 2) 위치도 2부 (1/5,000 정도)
4. 접수처 : 공보국관 : 서울특별시 도로공수과
 임관인 : **김영수** (작성준의자)

5. 기타 사항

- 1) 위 제후내의 신청을 받고 공식 설명서는 별도로 각시의 승인을
 얻어야 합니다.
- 2) **경차상, 특수** 등 공공기관에 의해 하역 도로공작을 하게 되면
 신청도 수송장안 일방면의 편리 신청 하여 무사할 것입니다.
- 3) 위 제후내의 신청 하지 아니한 경우 모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
 공작 승인을 하어드릴수 없으니 양지 하시게 하였습니다.

1963. 12.

서울특별시 공작 관 영 수

소 요 액 산

4단 × 50행 × 2,500원 × 2사	= 1,120,000
적액	112,000
계	1,232,000